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1. 4. 21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1년 4월 8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1년 4월 12일

라. 상정일자: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4. 19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감사담당관 송주용)

가. 제안이유

- 「공직자윤리법」 개정 사항인 민간위원 확대와 관련하여 우리 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개정 (안 제2조 제1항)

-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(안 제2조제1항제1호)
- 위원장은 민간위원 5명 위원 중에서 선임 (안 제2조제2항제1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상위법인 「공직자윤리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 위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,
-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2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, 제1호에서 위촉 대상인 5명의 위원을 판사·검사·변호사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음.
 - 이는 상위법인 「공직자윤리법」 개정(시행 2021.6.23.)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일을 법의 시행에 맞춰 2021년 6월 23일로 규정하였음.
- 검토 결과
 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 우리 구 조례를 적기에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29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1. 4. .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공직자윤리법」 개정 사항인 민간위원 확대와 관련하여 우리 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개정 (안 제2조 제1항)
- 나.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(안 제2조 제1항 제1호)
 - 민간 위원 5명의 위원은 판사·검사·변호사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
- 다. 위원장은 민간위원 5명 위원 중에서 선임(안 제2조 제2항 제1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공직자윤리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1. 3. 11. ~ 3. 31.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명”을 “7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3명”을 “5명”으로 한다.

1. 5명의 위원은 판사·검사·변호사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<u>5명</u>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	제2조(구성) ①----- ----- <u>7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3명의 위원은 법관·교육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.</u>	1. <u>5명의 위원은 판사·검사·변호사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</u>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	②----- ----- -----.
1.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<u>3명</u> 의 위원 중에서 선임.	1. ----- <u>5명</u> ----- -----.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